

2023년도 인천항 물동량 인센티브 지급기준

※ 공통사항

○ 실적 적용 대상 기간 : 2023.01.01. ~ 2023.12.31.

○ 주요 일정

2024.1분기	2024.2분기	2024.4분기
제1차 인센티브 접수	제1차 인센티브 지급	제2차 인센티브 접수·지급
선사-기준②~③, 화주·포워더-기준①~④		선사-기준①

※ 화주·포워더-기준⑤는 2023년 4분기 접수·지급 예정

○ 예산 및 산정·지급 관련 사항

- 추후 확정되는 인천항만공사 및 인천광역시 예산 편성 규모에 따라 금액 등 지급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
- 각 업체의 인센티브 수령액은 기준별(항목별) 배정 예산 중 40%를 초과할 수 없음
- 인센티브 지급액은 천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함
- 국외 소재 업체의 경우, 한국 지사 또는 국내 대리점으로 지급 가능하며 해외송금은 불가함
- 단가제 인센티브 기준의 경우, 배정 예산이 초과할 시 단가를 감액하여 지급함
- 증가형 인센티브 기준의 경우, 전년도 실적이 없는 업체는 당해 실적 모두 증가 물동량으로 적용 가능함
-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동일 지급대상 내 활용할 수 있으며(선사 잔액 → 선사 활용, 화주·포워더 잔액 → 화주·포워더 활용), 아래의 지급대상별 우선순위로 잔액을 활용함(단, 신규·전략 항로 잔액 미활용)
 - 선사 : ①수출입 물동량 증가형 → ②환적 → ③신규·전략 항로 인센티브 순 단가(한도) 보장
 - 화주·포워더 : ①냉동·냉장 → ②전략지역 인센티브 순 단가 보장 후, ③수출 물동량 증가형 내 실적비례

○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,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음

- 인천항 항만시설사용료 미납 업체
- 허위·부정한 방법으로 신청·지급 받거나 불법적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
- 각 지급기준에서 100만원 미만 수령 업체

○ 지급기준의 문구·용어 해석, 기타 제도운영 관련 이견이 있는 경우 인천항만공사의 해석에 따름

□ 선사 인센티브

◎ 검증 방법 : PORT-MIS 선사코드별 신고 물량을 기준으로 하며 오차 발생 시 IPA 검증 물량 적용

· [기준1] 신규·전략 항로

구 분	주요 내용				
대 상	- 2023년 인천항을 기항하는 '컨' 신규항로 개설 및 참여 선사 또는 전략항로 유지 및 참여 선사 · 1년 유지 필수, 주 1회 서비스 기준 개설 후 1년간 35항차 이상 기항 및 1.5만 TEU 이상 처리 필수				
산 식	- (실적비례제) 항로별 인센티브 한도 내 참여 선사의 물동량 실적 기준으로 분할 지급 · 항로별 인센티브 한도				
	지역	전략지역(미주·유럽)	서남아·중동·아프리카·대양주	동남아·극동러시아	중국·일본 등 기타 지역
	한도	신규 4억원 유지 3억원	신규항로 3억원	신규항로 2억원	신규항로 1억원
비 고	- 예산 초과 시 전략지역(미주·유럽) 신규·유지항로에 우선 지급하며, 이외 지역은 잔액 범위 내에서 기존 한도 비율(3:2:1)대로 재조정 - 신규항로는 해당 선사가 인천항에서 제공하지 않던 항로에 한정하고, 조정의 경우 기존 국외 기항지 중 50% 이상 변경 시에만 신규항로로 간주하며, 기타 신규항로 인정이 어려운 경우 「인센티브 지급 심의위원회」 논의 결과에 따라 인천항만공사가 결정 - 주 0.5회 서비스는 개설 후 1년간 18항차 이상 기항 시 항로별 인센티브 한도의 50% 지급				
예 산	11억원				

· [기준2] 수출입 물동량

구 분	주요 내용										
	항목① - 규모형					항목② - 증가형					
대 상	- 2023년 인천항 처리 '컨' 물동량 규모 1~5위 선사 (연간 10만 TEU 이상 처리 필수)					- 2023년 인천항 처리 '컨' 물동량이 전년 대비 2% 이상 증가한 선사 (연간 2만 TEU 이상 처리 필수)					
산 식	- 단가제					- (단가제) 전년 대비 증가 물동량 X TEU당 1,000원					
	구분	1위	2위	3위	4위	5위					
	단가(천만원)	5	4	3	2	1					
비 고	- 적/공/수출/수입/환적 '컨' 물동량을 실적에 반영 - 항목①,②에 모두 해당할 시 둘 중 수령액이 더 큰 항목에서 지급하며, 중복 수령 불가 - 규모형 인센티브 대상 선사가 증가형 인센티브 수령 시 차순위 선사에게 규모형 인센티브 지급										
예 산	1.5억원					4억원					

· [기준3] 환적

구 분	주요 내용
대 상	- 2023년 인천항 '컨' 환적(적/공) 물동량 1,000TEU 이상 처리 선사
산 식	- (단가제) 환적 물동량 X TEU당 3,000원
예 산	1.5억원

□ 화주·포워더 인센티브

◎ 검증 방법 : 업체에서 제출한 B/L 및 수출입신고 실적을 기준으로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검증하며, 오차 발생 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검증 물량 적용

· [기준1] 전략지역(미주·유럽)

구 분	주요 내용
대 상	- 2023년 인천항의 전략지역(미주·유럽) 직항항로를 이용하여 '적' '컨' 20TEU 이상 수출한 송하인(SHIPPER) 또는 수입한 수하인(CONSIGNEE)
산 식	- (단가제) 수출 물량 X TEU당 40,000원, 수입 물량 X TEU당 20,000원
비 고	- 예산 초과 시 수출 물량에 대해 우선 지급 - 증빙은 MASTER 및 HOUSE B/L을 기준으로 하고, 수출은 SHIPPER, 수입은 CONSIGNEE가 지급대상이며, 동일 건으로 신청이 중복될 경우 실화주에게 지급함 (단, MASTER DIRECT BL의 경우, LC 건의 경우에만 NOTIFY PARTY도 인정할 수 있으며 인천항만공사의 판단에 따름)
예 산	1억원

· [기준2] 냉동·냉장

구 분	주요 내용
대 상	- 2023년 인천항을 통해 미주·유럽 지역으로 냉동·냉장(REEFER) '적' '컨' 20TEU 이상 수출한 송하인(SHIPPER) 또는 수입한 수하인(CONSIGNEE) - 그 외 지역으로 냉동·냉장(REEFER) '적' '컨' 연간 20TEU 이상 수출한 송하인(SHIPPER)
산 식	- (단가제) 대상 물량 X TEU당 50,000원
비 고	- 예산 초과 시 미주·유럽 지역 우선 지급 - 증빙은 MASTER 및 HOUSE B/L을 기준으로 하고, 수출은 SHIPPER, 수입은 CONSIGNEE가 지급대상이며, 동일 건으로 신청이 중복될 경우 실화주에게 지급함 (단, MASTER DIRECT BL의 경우, LC 건의 경우에만 NOTIFY PARTY도 인정할 수 있으며 인천항만공사의 판단에 따름)
예 산	2억원

· [기준3] 수출 물동량

구 분	주요 내용													
	항목① - 규모형	항목② - 증가형												
대 상	- 2023년 인천항 처리 '컨' 수출 화물의 총 중량톤(G.W.T) 규모 1~5위 포워더 (연간 1만 톤 이상 처리 필수)	- 2023년 인천항 처리 '컨' 수출 화물의 총 중량톤 (G.W.T)이 전년 대비 3% 이상 증가한 포워더												
산 식	- 단가제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1위</th> <th>2위</th> <th>3위</th> <th>4위</th> <th>5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단가(천만원)</td> <td>3</td> <td>2.5</td> <td>2</td> <td>1.5</td> <td>1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1위	2위	3위	4위	5위	단가(천만원)	3	2.5	2	1.5	1	- (실적비례제) 예산 × 전년 대비 증가 물동량 ÷ 대상 업체 증가 물동량 합계
구분	1위	2위	3위	4위	5위									
단가(천만원)	3	2.5	2	1.5	1									
비 고	- House B/L을 기준으로 수출입신고 포워더 코드(통관고유부호 알파벳 4자리)의 실적을 산정 - 항목①,②에 모두 해당할 시 둘 중 수령액이 더 큰 항목에서 지급하며, 중복 수령 불가 - 규모형 인센티브 대상 포워더가 증가형 인센티브 수령 시 차순위 포워더에게 규모형 인센티브 지급													
예 산	1억원	1.2억원												

· [기준4] 복합운송 (Sea&Air, Air&Sea)

구 분	주요 내용
대 상	- 2023년 인천항을 통해 Sea&Air 또는 Air&Sea 복합운송 실적 보유 포워더
산 식	- (실적비례제) 예산 × 업체별 물동량 ÷ 대상 업체 물동량 합계
비 고	- 수출과 수입 모두 동일한 B/L을 기반으로 신고 운송주선업부호 및 화물이 같은 경우만 인정 - 동일 화물이지만 수출과 수입 물량이 다를 경우, 더 작은 물량을 실적으로 인정
예 산	0.5억

· [기준5] 인천시 포워더

구 분	주요 내용
대 상	- 인천광역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포워더 중 2023년 1~3분기 중 인천항 처리 '적' '컨' 수출입 화물의 총 중량톤 (G.W.T)이 200톤 이상인 업체
산 식	- (균등배분제) 예산 ÷ 대상 업체 수
비 고	- House B/L을 기준으로 수출입신고 포워더 코드(통관고유부호 알파벳 4자리)의 실적을 산정 -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47조 및 시행규칙 10조와 관련하여 당해연도에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지급대상 제외
예 산	1.3억원